

거창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

의안 번호	2012 ~ 64
----------	-----------

제출일자	2012. 9. 10.
제 출 자	거창군수

1. 제정이유

○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고 안전관리체계 정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물놀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주민안전의식 고취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물놀이 사전대비계획 수립 내용을 정함(안 제4조)
- 나. 물놀이 안전시설 정비 확충, 전수조사, 위험구역 설정·게시 등의 내용을 정함(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
- 다. 물놀이 안전관리요원 배치 및 교육 등의 내용을 정함(안 제8조부터 제17조까지)
- 라. 물놀이 안전관리 대응계획 수립 등의 내용을 정함(안 제18조부터 제21조까지)
- 마. 물놀이 안전관리 예산확보 및 홍보 등의 내용을 정함(안 제22조 및 제23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붙임 참조
- 나. 예산조치 : 47백만원(2012년도 예산 확보)
- 다. 합 의 : 기획감사실과 합의되었음
- 라. 기타사항
 - (1) 부패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 (2)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 (3)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 2012. 8. 09. ~ 8. 29.
 - (나) 예고결과 : 의견 없음
 - (4) 비용추계서 : 붙임

거창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름철 물놀이로부터 안전을 확보하고 주민안전의식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물놀이 관리지역(이하 "관리지역"이라 한다)"이란 하천, 계곡, 유원지 등 여름철 피서를 목적으로 찾는 물놀이 장소로써 군수가 지정하여 운영하는 장소를 말한다.
2. "물놀이 안전사고"란 수영, 보트놀이 등 물놀이 중에 발생한 안전사고를 말한다. 다만, 어로행위(낚시, 투망 등)중의 사고, 강을 건너는 도중의 사고, 실족 등 물놀이와 연계되지 않은 일반 수난사고는 제외한다.
3. "물놀이 위험구역(이하 "위험구역"이라 한다)"이란 물놀이 안전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하였거나, 깊은 수심, 급류, 수심급변 등의 위험요소가 많아 군수가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설정·게시한 구역을 말한다.
4. "안전관리대책기간"은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를 말한다.
5. "특별대책기간"은 7월 16일부터 8월 15일까지를 말한다. 다만, 물놀이 여건에 따라 군수가 필요한 경우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군의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사전대비 및 대응 계획 전반에 적용한다.

제2장 물놀이 안전관리 사전대비

제4조(사전대비계획 수립)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시행하기 위하여 군수는 매년 4월 해당연도의 물놀이 안전관리 사전대비 계획을 수립·운영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관리지역 전수조사 및 위험구역 설정·게시 계획
2. 안전시설 정비 및 확충 계획
3. 물놀이 안전관리요원(이하 “안전관리요원”이라 한다) 확보 계획
4.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와의 협력 구축 계획
5. 대국민 홍보 계획
6. 그 밖에 군수가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추진하는 시책

제5조(안전시설 정비·확충) ① 군수는 물놀이 안전관리대책기간 전까지 다음 각 호에 따른 안전시설을 관리지역 및 위험구역에 설치하여야 한다.

1. 위험표지판, 사망사고 발생지역 표지판, 위험구역 설정 안내표지판 등
2. 인명구조함 또는 이동식 거치대
3. 구명환·구명로프(투척로프)·구명조끼
4. 그 밖에 인명구조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군수가 정하는 장비

② 안전시설은 전체 수량을 산출하여 부족장비는 확충하고, 훼손장비는 정비하여 안전관리대책기간 전까지 설치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시기가 적절하다고 판단되지 않은 경우 안전시설의 설치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제6조(관리지역 전수조사) ① 군수는 체계적인 물놀이 안전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관내에 있는 물놀이 장소 및 시설에 전수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전수조사된 지역 중 관리지역으로 지정 관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 기존 안전시설의 수량, 연간 이용객수, 수심 등 필요한 기초자료를 정확히 조사하여 통합·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위험구역 설정·게시) ① 군수는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 방지나 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험구역을 설정하여야 한다.

② 위험구역으로 설정된 장소에는 위험구역 설정 안내표지판 및 부표 등을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하며, 일반인의 출입 및 그 밖의 행위를 금지

또는 제한하여야 한다.

제8조(안전관리요원) 군수는 신속한 인명구조활동을 위하여 관리지역에 다음 각 호의 안전관리요원을 확보·배치하여야 한다.

1. 공무원(공익근무요원을 포함한다)
2. 유급안전관리요원
3. 소방관서에 소속되어 수난구조 및 수변안전을 위해 배치된 인력
4. 재해취약지역 안전관리 사업을 위하여 「고용정책 기본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확보한 인력
5. 그 밖에 지역자율방재단 등 재난안전 예방을 위해 활동하는 민간단체

제3장 물놀이 안전관리요원의 배치·운영

제9조(안전관리요원 배치) ① 안전관리요원은 체계적인 물놀이 안전관리 유지를 위해 군수가 총괄하며, 물놀이 안전관리를 위하여 인명구조대 등을 설치하는 기관 등은 군수가 수립·시행하는 계획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② 안전관리요원의 배치장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지정한다.

1. 관리지역의 규모, 지리적 특성
2. 연 또는 일일 평균 이용객 수
3. 관리지역의 안전취약성 등

③ 안전관리요원의 배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험구역 : 고정배치
2. 관리지역 및 인명피해 우려지역 : 고정배치 또는 순찰배치

제10조(운영기간) 안전관리요원의 운영기간은 매년 6월 1일부터 8월 31일 까지로 한다. 다만, 물놀이 여건에 따라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안전관리요원의 배치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제11조(근무시간) 안전관리요원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한다. 다만, 관리지역의 여건을 감안하여 군수가 근무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제12조(임무) 안전관리요원은 군수의 지시를 받아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활동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물놀이 안전사고예방·예찰 활동
2. 인명구조 활동
3. 안전시설의 설치 및 회수
4. 응급환자 응급처치
5. 구명조끼 무료대여
6. 그 밖에 물놀이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제13조(근무복 등) ① 군수는 안전관리요원에 대해 근무복 및 안전장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근무복 및 안전장비의 종류는 군수가 정한다.

제14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안전관리요원의 근무상황을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② 안전관리요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무를 중지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근무지 무단이탈 행위
2. 근무 중 음주·도박 등 부적절한 행위
3. 감독공무원의 근무지시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4. 그 밖에 안전관리요원으로 근무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4장 안전관리요원 모집·교육훈련

제15조(자격기준) 안전관리요원의 자격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수난구조관련 유관기관·단체 발급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2. 수난구조관련 업무 1년 이상 종사한 사람
3. 수난구조관련 대학에서 수상구조 및 응급처치교과목 이수한 사람
4. 건강상태가 양호하고 봉사정신이 투철한 사람으로서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제16조(모집·선발) 군수는 제4조의 운영계획에 따라 안전관리요원 대상을 구분 모집한다.

제17조(교육 및 훈련) ① 군수는 제16조에 따라 모집·선발한 안전관리요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1. 구명환, 구명로프(투척로프), 구명조끼 등 사용요령
2. 심폐소생술, 기본응급처리법 등 구급요령
3. 물놀이 안전지도, 홍보 등 근무요령

② 교육 및 훈련은 소방서 또는 수상구조전문훈련기관 등에 위탁하여 집합 교육으로 실시한다. 다만, 결원에 의하여 새로 충원된 안전관리요원에 대하여는 개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안전관리요원의 교육훈련은 4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5장 물놀이 안전관리 대응

제18조(대응계획 수립) 군수는 매년 5월 해당연도의 물놀이 안전관리 대응 계획을 수립·운영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전담반 구성·운영
2. 휴일비상근무 및 현장 점검반 편성·운영
3. 상황보고체계
4. 유관기관과의 협조 체계
5. 안전시설 및 안전관리요원의 배치
6. 대국민 홍보계획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9조(휴일비상근무) ① 군수는 안전관리대책기간 내 휴일 비상근무자를 편성·운영하여야 한다.

② 특별대책기간에는 제1항에 따른 휴일 비상근무자를 확대·운영하여야 한다.

제20조(현장점검반) ① 군수는 관리지역의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지역별로 현장 점검반을 편성·운영하여야 한다.

- ② 현장 점검반에 대한 교육은 소방서 또는 수상구조전문훈련기관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 ③ 현장 점검반은 점검표에 따라 점검하여야 하며, 점검된 내용을 신속하게 재난관리부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 제21조(상황보고)** ① 군수는 관내에서 발생한 물놀이 안전사고에 대하여 경상남도지사 및 소방방재청장에게 3근무시간 이내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보고서식에는 사고일시, 장소, 안전시설 및 안전관리요원 배치유무, 기상상태, 인명피해 및 인적사항, 사고원인 및 조치결과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보고 후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경남도지사 및 소방방재청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장 예산 및 홍보

- 제22조(예산확보)** 군수는 관리지역 및 위험구역의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 1. 제5조에 따른 안전시설 정비·확충 예산
 - 2. 제8조에 따른 안전관리요원 운영 예산

- 제23조(홍보)** ① 군수는 제4조 및 제18조에 따른 사전대비계획 및 대응계획 수립 시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대국민 홍보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홍보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신문, 라디오, 인터넷, 스마트폰,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 2. 전광판, 현수막, 반상회보, 전단지
 - 3. 차량이용방송, 민방위경보장치, 재난 예·경보시설 등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거창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 비용추계서

1. 비용발생요인 및 관련 조문

가. 비용 발생 요인

- 위험표지판, 이동식거치대, 구명환, 구명로프, 인명구조봉 등 물놀이 안전시설물 설치 및 정비
- 물놀이 안전관리요원 운영에 따른 인건비 등

나. 관련조문

- 제5조(안전시설 설치·확충), 제8조(안전관리요원)

2. 비용추계의 결과

-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백만원)

구분		연도	1차년도 (2012년)	2차년도 (2013년)	3차년도 (2014년)	4차년도 (2015년)	5차년도 (2016년)	합계
세출	국·도비		10	15	15	15	15	70
	군비		37	40	40	40	40	197
	소계(a)		47	55	55	55	55	267
세입	국비		7	8	8	8	8	39
	도비		3	7	7	7	7	31
	소계(b)		10	15	15	15	15	70
총 비용(a-b)			37	40	40	40	40	197

3. 관련 의견

-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로부터 주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안전 시설물 비치 및 안전요원 확보·배치를 통해 안전거창 건설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작성자 : 재난관리과장 이 동 순

거창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2012 ~ 65
----------	-----------

제출년월일	2012. 9. 10.
제 출 자	거창군수

1. 제정이유

지진에 의해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시설물의 추가 붕괴 등으로 생기는 2차 피해를 방지하고, 군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진 발생지역의 시설물 위험도를 신속하게 평가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용어의 정의에 관하여 정함(안 제2조)

- 위험도평가 : 지진발생시 피해 시설물의 추가 붕괴 등으로 생기는 2차 피해를 방지하고 주민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피해 시설물의 상태를 신속히 평가하여 위험 정도를 표시하는 것

나. 위험도평가 실시 등에 관하여 정함(안 제4조)

- (1) 지진으로 상당수의 시설물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 (2) 여진 등으로 2차 피해가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
- (3) 중앙본부장,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경상남도지사가 위험도평가 실시를 요구한 경우

다. 위험도평가단 구성·운영에 관하여 정함(안 제5조)

- (1) 단장은 부군수, 단원은 건축·토목·안전관리 관련 전문가로 구성하여 등록·관리함
- (2) 위험도평가단에는 지진피해 지역별 또는 시설물별로 평가반을 둘 수 있음

라. 위험도평가 및 현장조치 등에 관하여 정함(안 제7조)

- (1) 지진피해 시설물의 중요도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
 - 학교, 공공시설 및 병원 등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위험도평가 실시
- (2) 평가결과를 3등급으로 구분 피해시설물의 잘 보이는 위치에 표지를 부착
 - 위험, 주의, 안전

마. 위험도평가 결과보고서 제출 등에 관하여 정함(안 제8조)

- (1) 평가를 완료한 후 15일 이내에 결과 보고서를 군본부장에게 제출
- (2) 단장은 1개월 이내에 최종보고서 등 결과물 전부를 군본부장에게 제출
- (3) 단장은 후속조치에 대한 상세계획 등 의견을 제시할수 있음
- (4) 군본부장은 최종보고서와 후속조치계획 등을 검토하여 보고서 발간

바. 단원 등의 안전 및 피해보상에 관하여 정함(안 제10조)

- (1) 위험도평가 시 단원 및 담당공무원 등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
- (2) 단원 및 담당공무원 등이 사망 또는 부상 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보험에 가입

사. 경비지원에 관하여 정함(안 제11조)

- 평가활동 등에 필요한 수당과 여비, 차량 임차비 등의 경비를 지급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붙임 참조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다. 합 의 : 기획감사실과 합의되었음

라. 기타사항

- (1) 부패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 (2)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 (3)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 2012. 7. 27. ~ 8. 16.
 - (나) 예고결과 : 의견 없음
- (4) 비용추계서 : 미첨부사유서 붙임